

소통하는 의정
공감받는 의회

제371회 임시회
'19. 3. 7.(목)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충청북도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 육미선 의원 등 7명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 2019년 2월 26일
- 회부일자 : 2018년 2월 27일

3. 제안사유

- 성인지예산제가 성차별을 개선하고 성평등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도록 그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가. 중점관리 사업: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한 사업, 사업 수혜자의 성별 통계가 가능하고 교육·스포츠·문화·편의시설·공공시설 사업으로서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업 등을 중점 관리 사업으로 선정·관리하도록 함(안 제4조).
- 나. 지침서 마련: 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 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이해 증진 등 실무 지식 함양을 위한 지침서를 마련하도록 함(안 제5조).
- 다. 성인지 예·결산서 분석: 매년 성인지 예산서와 성인지 결산서에 대한 심층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시 반영하도록 함(안 제6조).
- 라. 협의체 설치 및 운영: 성인지예산제 운영 협의체를 설치하고, 그 산하에 실무협의체를 두며 위원 등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7조 ~ 제17조).
- 마. 컨설턴트 양성·활동 지원: 공무원의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을 지원하는 민간 컨설턴트의 양성과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 바. **도민 참여 및 지원:** 성인지예산제 운영에 도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도민참여 예산제와 연계하여 운영하거나 지원하도록 함(안 제19조).
- 사. **업무의 위탁:**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업무를 전문성이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5.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최영지)

가. 제출배경

- 2013년 회계연도부터 성주류화의 주요 정책도구인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이 전면 시행되었지만, 아직 공무원의 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인식·이해부족 및 이를 부차적 업무로 치부하는 경향으로 제도운영의 실질적 성과를 거두지 못함.

※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도 2018년 3월 기획재정부의 성인지예산제 운용과 관련 적극적 조치를 권고함.

- 이에 성인지 예산제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실질적 성차별 개선 및 양성평등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조례 제정 시·도(1) : 광주광역시

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2조에서 “성인지예산제”를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로 정의함.
- 안 제3조에서는 성평등 목표설정부터 예산 수립·집행·결산, 결과 평가 등의 모든 과정에서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고, 소속 공무원 대상 교육 및 성차별을 시정하는 제도 및 정책이 수립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책무를 규정함.

- 안 제4조에서는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매년 중점관리 사업을 선정·관리하도록 규정함.
- 안 제5조에서는 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 성인지예산제에 대한 이해 증진,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활용 등 실무 지식 함양을 위한 지침서를 마련하도록 규정함. 특히 지침서 작성 시, 「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충청북도 성별 영향평가 조례」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결과 등과 연계토록 하여 성인지 관련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 안 제6조에서는 매년 작성되는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에 대해 심층 분석 연구를 실시하고 다음 연도에 반영토록 규정하였고, 이에 필요한 비용(연 20,000천원)을 추계하여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안 제7조부터 제17조까지는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충청북도 성인지예산제 운영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함)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운영에 필요한 기능, 구성, 임기, 회의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 협의체는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민·관 거버넌스 기구로 전문성과 민의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안 제15조에서는 협의체 업무 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해 분야별 또는 소관 부서별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18조에서는 공무원의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시, 자료 제공 및 코멘트를 제공하는 민간 컨설턴트의 양성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규정하였음. 이를 통해 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 및 업무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19조에서는 도민 의견을 수렴하여 성인지예산제 운영에 반영하고, 도민 참여의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 예산제와 연계한 성인지예산제 운영 방안을 마련토록 규정함.
- 안 제20조에서는 제5조에 따른 지침서 작성, 제6조에 따른 성인지 예산·결산서 분석 및 제18조에 따른 컨설턴트 양성 및 활동 지원 업무는 전문성이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도모함.

다. 종합의견

- 현재, 성인지예산제는 2013년부터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배포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작성기준’에 의해 추진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안정화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본 조례안은 성평등 달성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충청북도 차원의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내용 및 법적으로 타당하며,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조례안 예고 및 집행부와의 협의를 거친 바,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없음.